기관이용안내서

2024년

빌리지포유 충주요양원

“기관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리지포유 충주요양원입니다.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새 출발에 항상 함께하였던(구)드림,유 웨딩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드리고자
빌리지포유 충주요양원으로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저희 빌리지포유 충주요양원은 다년간 노유자 시설을 설계, 운영한 경험이 많은
포유 스토리와 함께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의 부모를 모신다는 마음으로,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어르신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어르신의 따뜻하고 평안한 오늘을 빌리지포유 충주요양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Ⅲ.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Ⅳ.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Ⅴ.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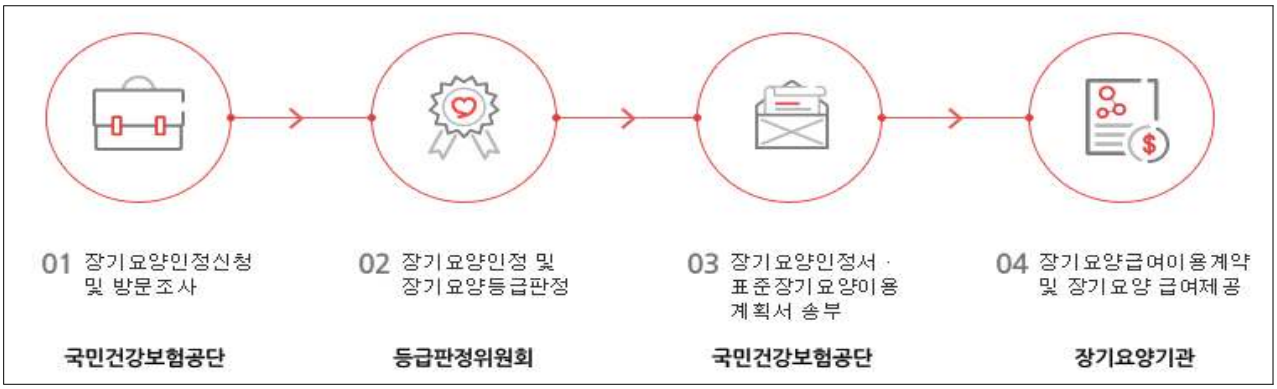

Ⅵ.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①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②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③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운영규정 개요

Ⅰ. 기본정보

기관명	빌리지포유 충주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종류	시설급여
설치일자	2022.02.08
소재지	충북 충주시 예성로 259
전화	043-855-0855/010-6826-0855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Ⅱ.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49명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자가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하였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혹은 알려지지 않은 기타 전염병 등으로 의심되거나 밝혀졌을 때 ④ 이용자가 심한 치매나 정신질환 또는 성격상 문제가 있어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줄 때 ⑤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발생할 때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라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보호자변경)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원,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

■ 시설 규모 및 설비 현황

Ⅰ. 시설규모

건물층수	지상3층
건축면적	2층 573.743 ㎡, 3층 542.658 ㎡

Ⅱ. 설비현황

(단위: 개)

침실	특별실	사무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15	1	2	1	1	2	1	17	2	1

Ⅲ. 시설사진



[외 관]



[로 비]



[실 내]



[생 활 실]

■ 보험가입 현황

책임보험 내용	계약기간	증권번호
삼성화재 화재보험	2022.06.16.~2027.06.16	52213821390000
삼성화재 업무배상책임보험	2023.02.11.~2024.02.10	82300808094000

■ 종사자 근무체계

Ⅰ. 인력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계약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위생원	기타
인원	1	2	1	3	1	25	1	1

Ⅱ.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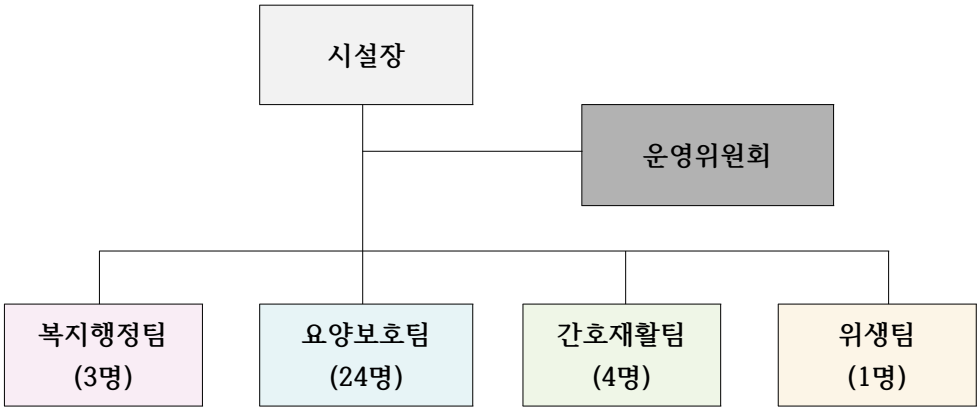

■ 급여 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칫솔질/ 의치손질/ 구강청결(완전구강관리)
	머리감기도움	머리감기/ 침상 머리감기
	몸단장	면도/ 머리단장/ 손, 발, 청결유지
	옷갈아입기도움	옷갈아입기
	신체청결도움	몸씻기 도움/ 전신 및 부분 닦기
	식사도움	일반식사/ 경관영양
	체위변경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도움	변기사용/ 침상배변·배뇨/ 기저귀 교환 / 유치도뇨관 사용도움
	이동도움	침상내이동/ 휠체어 이동/ 보행 돕기
	신체기능 유지증진	관절경축 예방/ 일어나 앉기, 서기, 보행, 운동 도움/ 보장구 이용도움/ 경구약물 복약도움
	산책(외출)동행	산책(외출)동행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인지관리지원	인지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의사소통 도움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훈련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여가, 정서 프로그램	여가, 정서 프로그램

	물리치료	온냉열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관찰 및 측정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측정/ 신장, 체중, 가슴둘레 측정/ 혈당 측정
건강 관리	기초건강 관리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투약관리	약물 관리/ 투약이행관리/ 경구 투약 비위관·위관 투약/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인슐린 주사
	감염간호	감염예방/ 손씻기/ 소독관리/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관절경축 예방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치매돌봄 정보제공	치매약물 관리
	인지훈련	인지기능 평가/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의료기관 의뢰 등	촉탁의 진료지원/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간호관리	욕창관리	욕창예방/ 욕창간호
	영양관리	영양상태확인/ 위루관(PEG-tube) 관리/ 비위관 관리 및 경관영양 식이제공
	배설관리	배뇨훈련/ 유치도뇨관 관리/ 관장/ 장루관리/ 회음부 간호
	통증관리	통증사정/ 온·냉요법/ 이완요법/ 약물요법
	호흡기 간호	가습기/ 산소요법/ 흡인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구강간호	구강간호
	당뇨발 관리	당뇨발 관리/ 상처관리
	투석관리	복막투석 관리/ 혈액투석 관리
응급 서비스	응급간호	질식시 응급대처/ 경련시 응급대처/ 화상시 응급대처/ 낙상시 응급대처 뇌졸중 전조증상시 응급대처/ 심장마비시 응급대처
임종관리	임종간호	임종간호

■ 일일 생활시간표

시간	내용
07:00~07:30	기상, 개인 위생점검 및 식전투약 후 아침 식사 준비
07:30~08:30	아침 식사 및 구강 관리
08:30~09:30	투약 및 개인위생 점검 (환복일정) 후 휴식
09:30~11:30	목욕 일정 및 오전 물리치료 기초 의료서비스 (혈압,체온,맥박,혈당 등)
11:30~13:30	식전 체조, 점심 식사, 투약 및 구강 관리, 영양공급량 점검
13:30~14:30	프로그램 (인지, 여가 등 특화 프로그램)
14:30~16:30	오후 간식 및 오후 물리치료, 자율활동(산책, 티비 시청 등)
16:30~18:00	저녁 식사, 구강 관리 및 투약 관리
18:00~21:00	휴식 및 자유 활동, 취침

■ 프로그램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능 회복훈련 (20분)	기능 회복훈련 (20분)	기능 회복훈련 (20분)	기능 회복훈련 (20분)	기능 회복훈련 (20분)	기능 회복훈련 (20분)	기능 회복훈련 (20분)
식전 맨손체조 (10분)	식전 맨손체조 (10분)	식전 맨손체조 (10분)	식전 맨손체조 (10분)	식전 맨손체조 (10분)	식전 맨손체조 (10분)	식전 맨손체조 (10분)
여가프로그램 -음악 신체 (60분)	인지프로그램 -인지 힐링 (60분)	인지프로그램 -교구 블럭 (60분)	인지프로그램 -미술 언어 (60분)	자체프로그램	-	-

▶ 매월 생신잔치 진행
▶ 어버이날 행사 및 노인의날 행사 진행
▶ 크리스마스 및 송년회 진행

■ 항목별 비용

Ⅰ. 급여

(기준: 월 30일/ 단위: 원)

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자부담			비급여		본인부담계		
		20%	12%	8%	식재료 (간식포함)	상급침실 (필요시)	20%	12%	8%
1	2,527,200 (84,240/일)	505,440	303,270	202,170	327,000	-	832,440	630,270	529,170
2	2,344,500 (78,150/일)	468,900	281,340	187,560	327,000	-	795,900	608,340	514,560
3~5	2,214,000 (73,800/일)	442,800	265,680	177,120	327,000	-	769,800	592,680	504,120

Ⅱ. 비급여

식재료	1일 3식 9,900원 (1식 3,300원)
경관유동식 (뉴케어)	1일 3식 10,500원 (1식 3,500원)
간식	1일 2회 1,000원
이·미용	자원봉사자 활용
상급침실이용	■ 1인실 : 15,000원 / 일 ■ 2인실 : 10,000원 / 일

※ 차상위, 의료수급권자는 8~12%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식비 포함 무료

Ⅲ.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수급자 본인부담금			
	일반(20%)	감경대상자 (12% / 8%)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8%)	기초생활수급자 (0%)
초진 (17,610)	3,520	2,110 / 1,400	1,400	0
재진 (12,590)	2,510	1,510 / 1,000	1,000	0

※ 계약의사: 연세의원

Ⅳ. 가정간호 처치 본인부담금

(단위: 원)

항 목	본인부담금	항 목	본인부담금
요양원 방문료	7,900	검진(-소변.객담)(+HbA1c)	33,800
가정방문 1인 방문료	15,900	결핵 특이항원(잡복결핵검사)	19,800
가정방문 2인 방문료	23,900	ABO.RH(혈액형)	9,200
T-tube(튜브교체 재료비 별도)	9,300	B형간염 항원,항체	13,700
L-tube	11,800	B형감염 PCR검사	25,000
Foley 2way	11,700	C형간염 항체	11,500
Foley 3way	11,900	C형감염 PCR검사	21,100
N/S 500ml	9,100	A형간염 항체검사	11,500
N/S 250ml	9,100	매독검사(VDRL)	8,400
N/S 1000ml	9,300	매독검사(VDRL)-정밀항체검사	15,000
5%D/S 500ml	9,100	소변검사	8,700
5%D/W 500ml	9,100	소변검사+Culture	13,000
B.I(방광세척)	15,900	소변 Culture만	12,300
Sore	10,600	빈혈검사	9,600
Simple dressing	9,300	입소검진(진단서포함)	30,000
장루처치	10,100	유바솔-비급여(Single)	40,000
Enema-Glycerin	9,800	유바솔+N/S 500ml	49,100
단순도뇨	9,800	유바솔+5%D/S 500ml	48,900
IM-도란찐(해열,진통)	8,400	유바솔+5%D/W 500ml	49,100
IM-토라렌(진통)	8,400	유바솔+IM 도란찐	48,400
IM-암브록솔	8,400	유바솔-토라렌	48,400
IM-페니라민	8,300	유바솔-암브록솔	48,400
IM-덱사	8,300	유바솔-페니라민	48,300
HbA1c	9,600	유바솔-덱사	48,300
일반검사 전체	20,000	콤비-375-비급여	80,000
검진 전체	36,300	위너프-502-비급여	100,000
검진 전체(+HbA1c)	38,000	위너프-1085-비급여	120,000
검진(-소변)	34,200		
검진(-소변)(+HbA1)	35,200		
검진-(소변.객담)	32,100		

※ 가정간호: 대신의원